

【서평】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윤유숙 지음(혜안, 2016, 309쪽)

장 순 순*

1.

울릉도는 ‘우산국’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512)조에 따르면 그해 여름 6월에 신라장군 異斯夫가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戰艦에 나누어 싣고 가 우산국을 항복시켰다고 한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으로서 삼국시대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우산국이라는 고대 부족 읍락국가를 이루고 半農半漁의 생활을 하며 살았으며, 영역은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독도를 포함해 울릉도 주변의 모든 小島嶼를 포함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우산국이 신라에 歸復하여 공물을 바쳤다’는 기사가 나오고,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도 ‘芋陵島人이 고려정부에 來朝하다’, ‘羽陵城主가 토산물을 보내오다’는 기사와 함께 ‘울릉도의 목재 벌목’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울릉도는 신라시대부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 내에 편입되었으며, 신라 또는 고려에 복속하는 형태의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앙정부가 울릉도에 대해 직접 관리를 파견하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여 관리할 지를 타진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결국 관리의 파견은 없었다.

조선정부는 국초부터 왜구의 침탈로부터 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세금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해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도서 주민들의 섬 거주를 금지하고 주민들을 육지로 刷還, 刷出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취한 ‘도서지배 정책’의 일환이었다.

울릉도에서 주민의 거주를 금지하는 정책은 태종대에 시작되어 1883년까지 5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울릉도의 존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문학작품이나 문집에서 울릉도가 무릉도원 내지 이상향의 섬으로 그려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릉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데다 상주하는 관리조차 없었고, 양질의 목재와 대나무, 산삼, 전복 등 해륙의 산물이 풍부한 섬이었기에 울릉도를 찾아 비공식적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7세기 말 조선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의 주민들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어로행위를 하였고, 일본에서도 17세기에 70 여 년 동안 일본의 산인(山陰) 지방, 즉 동해에 면하고 있는 지금의 돗토리 현(鳥取縣), 시마네 현(島根縣), 아마구치 현(山口縣)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에 출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 돗토리 번(鳥取藩) 요나고(米子)의 조닌(町人) 오야·무라카와 가문 등의 도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7세기 말 조일 양국인 울릉도에서 만나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서, 1693년에 돗토리 번 요나고의 요야 가문의 선원들이 두 명의 조선인(안용복, 박어둔)을 울릉도에서 납치해 가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일 간에 울릉도의 領屬 여부가 외교문제로 부상하게 되고, 쓰시마 번을 매개로 한 외교교섭이 시작된다. 이 사건을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에도시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또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元祿竹島一件)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데,

이로써 울릉도는 조일 양국의 외교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의 에도막부 사이에 외교문제로 부상한 ‘울릉도쟁계’를 중심으로 ‘역사 속의 울릉도’를 ‘근세 조일관계’ 즉, 조선후기와 에도시대라는 틀 속에서 풀어낸 것이다. 저자도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울릉도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있었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사실은 언급되지만, 그들을 연행한 일본인들이 왜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건너와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미흡한 상태이다. 저자는 먼저, ‘역사 속의 울릉도’를 영유권의 측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쇄환·쇄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도항했던 전라도, 경상도 주민들과 일본 돛토리번의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 ‘울릉도쟁계’, 그 이후의 울릉도 관리의 강화 및 주민의 울릉도 거주 등의 역사를 조일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근세 환동해권에서의 조일교류라는 틀 속에서 울릉도를 조망해 봄으로써 조선-울릉도-일본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일국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환동해권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입체적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즉, 조선의 울릉도 관리 형태, 양국민의 울릉도 도항 목적,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에서 취해진 외교적 조치, 울릉도에 중심축을 두고 일본의 산인지방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로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입장이다.

2.

이 책은 전체 6개의 장과 1개의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3개절에서 5개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제1장 ‘17세기 환동해권에서의 울릉도’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울릉도쟁계’ 발생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정부의 울릉도 관리 정책을 개관하고, 동시기 일본 측의 울릉도 도항 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저자는 조선정부가 국초부터 울릉도에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울릉도의 거주민을 색출하여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쇄환’ 내지 ‘쇄출’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울릉도 주민의 쇄출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세종대에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울릉도에 주목하여 백성과 관리를 거주시키자는 의견이 조정에서 논의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의 이주와 지방관 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간헐적으로나마 울릉도를 순찰하기 위하여 관리가 파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초와 달리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왜구의 침탈 가능성은 약화되고 왜란과 호란이라는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있었던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조선정부는 백성들의 울릉도 도항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수익성을 위해 울릉도에 몰래 도항하는 조선인들이 1693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17세기 쓰시마 종가기록(對馬宗家記錄)과 돛토리번정사료의 분석을 통해서 ‘울릉도쟁계’가 있기 전부터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울릉도의 활용가치에 주목한 조일 양국인이 ‘울릉도쟁계’ 이전에 이미 울릉도에 도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제2장, ‘돛토리번(鳥取藩) 조닝(町人)의 울릉도 도항’에서는 돛토리번 조닝인 오야(大谷) 가문과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이 요나고에 이주하여 정착한 내력(出自), 막부로부터 ‘竹島도해허가’ 문서를 발급받아 울릉도 도항권을 독점하게 된 과정과 울릉도에 도항하게 된 정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를 비롯한 기존 연구가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을 ‘근대 이전의 독도 영유권’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다루거나 또는 17세기 '울릉도쟁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두 가문이 '竹島도해허가'를 통해 일본 내에서 누린 특권과 일본 사회 내 울릉도 산물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들 가문은 울릉도 특산물을 매개로 쇼군 알현 등의 특권을 누리면서 매년 울릉도에 교대로 도항하여 엄청난 전복과 해산물을 획득하였으며, 울릉도 전복을 막부의 요인들에게 헌상하면서 70여 년간 경제적인 특권도 누렸다. 또한 두 가문이 울릉도에서 얻은 물품은 나가사키로 옮겨져 견직물, 호피(虎皮), 설탕(砂糖)과 같은 수입품과 교환되어 일본 각지에서 판매되었고, 급기야 울릉도산 전복이 일본 내에서 돗토리 번의 대표적인 산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울릉도의 목재가 쇼군의 거처인 에도성(江戸城)의 한 부분에 장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리고 막부의 '竹島도해금지령(1696년)'으로 울릉도 도해 권리를 상실한 두 가문이 울릉도 도해의 재개와 가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취한 행보 등도 검토하였다.

제2장에 이은 보론에서는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川上健三 著, 古今書院, 1966년)라는 연구서를 '울릉도도해금지령 이후 松嶋(독도) 도해 문제 재고(再考)'라는 제목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는 가와카미의 논리가 현재까지도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와카미가 역사학의 관점에서 전근대 시기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세 가지 논리(① 막부가 竹嶋(울릉도)도해면허 외에 松嶋(독도)도해면허를 발급했다. ② 막부는 1796년 竹嶋(울릉도)도해금지령을 발표했으나 松嶋(독도)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③ 1696년 이후에도 일본은 松嶋(독도)를 오키 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를 돗토리 번정사료를 통하여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이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가와카미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1696년 울릉도도해금지령에 '독도 도항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막부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도 해면허’에 해당하는 막부의 공식문서가 발급된 적이 없었고,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면 당연히 독도에도 가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별도로 ‘독도도해금지령’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사자인 두 가문은 1696년의 울릉도도해금지령을 ‘울릉도와 독도의 도항 금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본 책의 목적이 ‘역사 속의 울릉도’의 규명에 있다고는 하지만 울릉도 연구가 독도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인 독도의 영유권이 얼마나 역사적인 근거를 배제한 정치적인 논쟁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1693년 돛토리 번 어민의 조선인 연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쟁계’에 관한 실증적이고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일관계에서 쓰시마 번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저자는 먼저 ‘울릉도쟁계’가 발생하기 이전에 쓰시마 번이 울릉도에 대해 취했던 움직임과 1693년 발생한 조선인의 돛토리 번 연행사건에서 쓰시마 번이 조선을 상대로 진행한 외교적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696년 조선이 막부로부터 “향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겠다”는 외교적인 답변을 얻게 된 과정과 막부가 울릉도도해금지를 결정하기까지 쓰시마 번이 조선을 상대로 진행한 교섭의 추이도 규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쓰시마는 막부를 대신한 조선통교 담당자로서 이들 조선인 송환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었다. 기존의 ‘울릉도쟁계’ 연구 중 가장 큰 문제는 한일간의 독도영유권이라는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사건 발생 당시 조일 양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울릉도쟁계’의 본질 규명, 나아가 독도영유권이라는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틀 속에서 구조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3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데 저자가 조선후기 한일관계(근세 조일관계)에 정통

한 전공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제3장과 마찬가지로 제4장 또한 저자의 전공 전문성이 단연 돋보인 장이다.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돛토리 번에 하달된 지 불과 몇 달 후인 1696년 5월 안용복 일행이 탄 선박이 울릉도에서 오키(隱岐)로 건너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4장 ‘1696년 조선인들의 오키(隱岐) 도항과 그들의 송환과정’에서는 이른바 안용복의 2차 도항사건과 송환과정을 쓰시마 번을 매개로 하는 조일통교시스템 속에서 검토·분석한 것이다. 저자는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항은 조선인이 일본측 지배권력에 대한 직소를 주장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안용복 등의 송환이 1693년의 ‘표류민 송환 관례’가 아닌 현지 추방의 형태로 귀국하게 된 배경에는 조일통교를 전담해 온 자번(自藩)의 외교적인 위치와 조일통교의 틀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쓰시마 번이 이 사건에 임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18세기~19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울릉도 도해에 관한 조일 양국의 정책과 양국민의 도해 실태를 ‘18세기 이후의 울릉도’라는 주제로 다루었다. 조선후기 조일 양국의 울릉도 도항에 관한 기존 연구가 17세기 말의 ‘울릉도쟁계’와 이후 강화된 조선정부의 수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라면, 저자는 19세기말 조선의 울릉도 정책이 이주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 그 동안의 울릉도 상황을 다뤘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다. 저자는 18세기 이후 조선정부의 울릉도 관리는 울릉도 수도정책과 조선인의 울릉도 산물 획득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수도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은 계속되었다고 보았다. 울릉도에 대한 수도는 1699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1882년 이주에 의한 개척방침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정부의 수도정책은 189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1696년 에도 막부의 ‘竹島도해금지령’ 이후에도 오키·나가토

(長門)·이와미(石見) 등 산인지방 주민들은 울릉도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836년 하마다 번(浜田藩) 이마즈야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 도항 사건이 발각되면서 1837년 막부가 전국 법령 형식으로 ‘다케시마도해금지 오후레(竹島渡海禁止御觸)’을 발포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저자는 하치에몬 사건을 계기로 ‘竹島 도해’ 행위가 지니는 위법성과 중대성을 전국적인 범위로 일반에게 주지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저자는 이 오후레에 “異國渡海는 엄중하게 금지된 사항이고 향후 竹島도 마찬가지로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竹島’가 조선의 영역이며 ‘竹島’ 도항은 이국도해를 금지하는 막부의 쇄국정책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며,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막부가 재확인해 준 조치였다고 분석하였다.

총장인 제6장에서는 이른바 막부가 전국 법령의 형식으로 ‘竹島 도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단초가 된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을 기록한 일본 사료를 ‘사료소개 -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을 기록한 일본 사료’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후지카와 세이사이(藤川整齋)의 자필교본인 「天保雜記」 제18책에 수록된 하치에몬 사건 관련 문서와 『竹島渡海一件記』를 번역하고 각주를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정리하였다. 저자는 해독에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 근세문서에 능통한 연구자이다. 저자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재직할 당시에도 울릉도·독도 관련 근세 일본자료를 번역하고 꼼꼼하게 각주를 달아 출판함으로써 자료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도연구자들에게 다수 제공한 바가 있다. 저자가 이 장에서 특별히 ‘사료소개’라는 제목으로 하치에몬 사료를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한 것은 그동안의 울릉도·독도 연구가 17세기말 ‘울릉도쟁계’ 집중되어 있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1837년 막부가 내린 ‘다케시마도해금지오후레’가 1696년 막부의 ‘竹島도해금지령’과 달리 전국 법령 형식이면서 막부가 일본인의 ‘竹島도해 금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측 1차 사료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독도연구자들에게 독도영유권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생각한다.

3.

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울릉도쟁계’에 관해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록한 조선의 문헌과 일본 사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같은 분야의 전공자로 멀리서 바라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바쁜 업무 수행 중에도 업무를 연구로 확장시킨 저자의 소중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조선후기 한일관계(‘근세 조일 관계’)가 주전공이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재직 중인 저자는 한 때 동 재단 독도연구소에서 독도 연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天保雜記(천보잡기)』: 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영토해양연구』 1-1, 2011), 『근세 돛토리번(鳥取藩) 町人の 울릉도 도해』(『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시마네현 ‘죽도(竹島)문제연구회’ 제2기 최종보고서 검토』(『영토해양연구』 1-4, 2012),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양상』(『동양사학연구』 118, 2012),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사건과 쓰시마번(對馬藩)』(『동양학연구』 123, 2013), 『1696년 오키(隱岐)에 도향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일본역사연구』 38, 2013)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저자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 속의 울릉도’를 조선과 일본, 양국사료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울릉도 영속 문제-궁극적으로 한일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조선과 일본 에도막부 사이에서 돛토리 번과 쓰시마 번

을 매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정부·쓰시마 번·돗토리 번·에도막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기 조선과 일본의 사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향후 독도연구자들이 취해야 할 연구방향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변례집요』·『증정교린지』 등 조선측 사료 외에도 299쪽~301쪽에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돗토리번정사료를 비롯하여 돗토리 지역사료, 『竹島紀事』를 비롯한 쓰시마 종가문서, 『通航一覽』 등 막부 문서를 활용하여 ‘역사 속의 울릉도’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울릉도·독도를 연구한 책 가운데 일본측 사료의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음으로, 비공식적인 경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산인지방에서 오키를 거쳐 한반도 동해안으로 오는 조일교류의 경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실태를 규명하였다는 것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점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류경로가 있었다. 쓰시마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경로, 규슈(九州)의 고토(五島)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통로, 그리고 산인 지방에서 오키를 거쳐 한반도 동해안으로 오는 경로가 그것이다(10쪽). 쓰시마와 경상도(부산왜관)을 연결하는 경로는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공식적인 경로였으므로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방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규슈의 고토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통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해난사고를 분석한 『전라도와 일본』(정성일, 경인문화사, 2014) 등 표류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소나마 존재한다. 그러나 산인지방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로에 관한 연구는 표류민 연구 분야에서 조일 양국인의 상대국 표착과 송환 사례로써 언급되는 정도일 뿐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 방법에서도 찾아진다. 저자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사료를 그대로 직역하여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를 근거로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갈 때 직접 인용방식이 간접 인용방식보다 우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저자만의 독특한 기술 방식이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일본 근세 문서의 해독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에게 일본측 1차 사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각주의 활용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장을 예로 들어, 오야가문의 역사, 오야진기치(大谷甚吉)가 울릉도를 목격하게 된 배경, 돗토리번의 이케다 가문의 역사,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역사, 두 가문이 막부에 울릉도 도해계획을 청원하게 된 배경과 과정, 울릉도 도항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 1625년 돗토리 번주 앞으로 죽도(울릉도) 도해를 허가하는 로주(老中)의 奉書, 즉 ‘竹島도해면허’ 등 주요 인물이나 가계나 역사 용어에 대해서 각주를 활용하여 설명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든 이 책에서 저자는 ‘역사 속의 울릉도’를 일국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환동해권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조선-울릉도-일본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울릉도 관리 형태, 양국민의 울릉도 도항 목적, 그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에서 취해진 외교적 조치, 울릉도를 중심으로 동해안과 일본의 산인 지방을 연결하는 경로의 실태 등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

저자는 쓰시마 번은 조선전기부터 울릉도에 관심을 보여 왔고,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1693년 이전에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

한 1693년 연행된 조선인을 송환하라는 막부의 지시를 받았을 때 번 자체의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竹島’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막부에 상신하지 않은 채 조선과의 교섭을 개시하였다. 더구나 당초 막부의 지시는 “竹島에 조선인의 도항을 금지하라는 뜻을 조선 정부에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쓰시마 번은 ‘일본의 竹島’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계를 조선에 제출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의 지경 울릉도’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회답서계의 내용을 고쳐 줄 것을 조선에 거듭 요청하고,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과의 교섭에 임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쓰시마 증가문서의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조일통교’라는 관점에서 왜 쓰시마 번은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일교섭에 임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저자는 ‘울릉도쟁계’, 즉 울릉도 영속논쟁의 종결시점을 1696년 10월 월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의 사망을 조문하고 요시자네(宗義眞)의 섭정을 축하하기 위해 쓰시마에 도해한 문위행에게 요시자네가 직접 막부의 결정을 통보한 때로 파악하였다(3장). 물론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고 그것을 조선에 통고했다는 점에서는 울릉도의 영속논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은 1693년부터 시작된 “울릉도쟁계”, 즉 울릉도에 출어한 조선인의 일본연행과 조선과 쓰시마 번간에 계속되던 울릉도 영속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라는 저자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울릉도쟁계’의 종결시점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 번은 1696년 1월 막부의 ‘竹島도해금지령’을 바로 조선에 전달하지 않았고, 그해 10월에 있을 문위행의 도해까지 미뤘다. 그리고 그 사이 오키에 도항해 온 안용복을 포함한 11명에 달하는 조선인의 송환에 대해서 쓰시마 번은 막부로 하여금 1693년에 있었던 표류민송환시스템이 아닌 추방형식을 취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쓰시마 번의 이

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조일외교 교섭에 제3자가 관여함으로써 조일간의 새로운 외교절차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결국 1696년 안용복 일행의 도일사건의 처리는 쓰시마 번으로서는 조일간의 유일한 외교교섭 창구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번(自藩)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선과 일본 두 정부 차원에서 울릉도 영속문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은 1699년 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언급이 지극히 적다는 점,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 중에서 2012년 이후 연구성과가 저자 자신의 연구결과 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는 첫머리에서 ‘역사 속의 울릉도’에 관한 규명이 본 책의 작성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가 고래로부터 ‘모자(母子)섬’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두 섬이 함께 언급되고 연구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특히 ‘역사학의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울릉도의 주요 연구 배경으로 독도가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